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05. 1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제정조례안은 2021. 04. 29. 최재란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 04. 30.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의안번호 제2607호).

2.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한 자립지원협의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제16조

-「청소년 기본법」제3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

라. 기타

1) 제정안 : 별 첨

2) 조례안 예고 : 2021. 5. 1. ~ 2021. 5. 5.

5.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훈)

○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보호 대상자의 나이가 만18세이면 대학진학, 직업훈련, 장애 질병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아동·청소년은 보호조치를 종료하고 시설에서 퇴소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2010년 약 8,500여 명에서 2014년 이후는 약 5,000명 정도로 감소하여 2019년도에는 4,000명이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음.

1) 보호조치 아동 현황

1)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2019년에는 2,587여 명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였으며, 만기퇴소가 1,312명, 연장종료가 1,275명임.

[2]2019년 보호종료 아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보호종료아동		
	만기퇴소	연장종료	총계
양육시설	645(65.0)	347(35.0)	992(100.0)
공동생활	120(69.8)	52(30.2)	172(100.0)
가정위탁	547(38.4)	876(61.6)	1,423(100.0)
합계	1,312(50.7)	1,275(49.3)	2,58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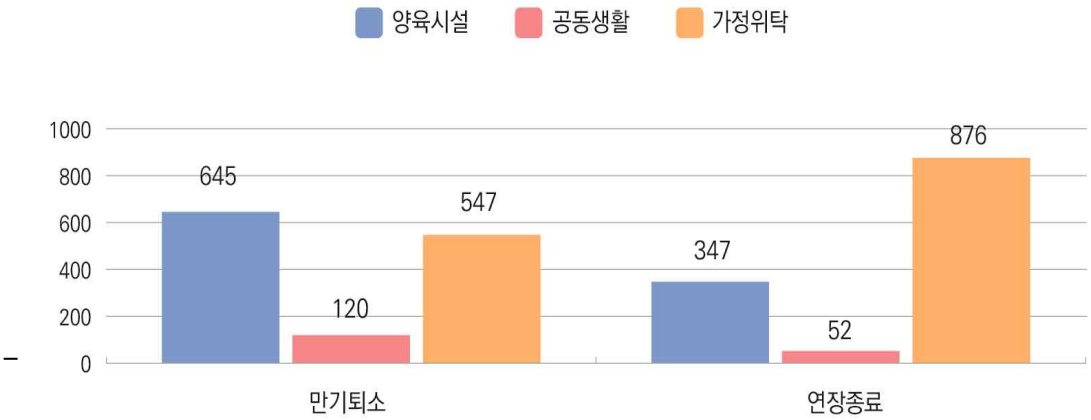

- 양천구는 소재 아동양육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은 최근 3년간 서울SOS어린이마을 등의 50명임.

양천구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등 현황

(단위 : 명)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합계
2018년	10	3	5	18
2019년	3	6	4	13
2020년	8	7	4	19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시설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 종료된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 종료된 아동

2) 아동권리보장원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 퇴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자립정착금으로 500만원,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지원, 자립수당으로 매달 30만원을 36개월 지원 및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자립정착금 및 지원금들은 고정 수입 등이 없기 때문에 생계유지 등의 의식주를 위해 금방 소진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퇴소시기가 다가올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퇴소 후에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하며, 심리적 고립감,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및 무력감 등이 나타나기도 함.

- 본 조례는 보호가 종료된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자 제정 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이후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 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기본법」의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이 대상.
- 안 제4조는 구청장의 퇴소청소년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으

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아동 종료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에 근거함.

- 안 제6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퇴소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립지원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만 18세가 되면 공식적인 보호와 지원은 모두 종료되며, 이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년기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로 자립 후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6., 2018. 3. 6.>

1.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